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제도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 도입배경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두는 '시군구 특례제도' 도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01.13. 시행)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는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지역특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존재
-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강화 및 책임성 확보를 통한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 필요
- 개별 시·군·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발전 견인 필요

기존 한계 극복

- 개별 시·군·구의 특성이 반영된 지역맞춤형 특례
-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과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필요한 특례 발굴
- 인구로 포괄되지 않는 다양한 요소 고려 및 시·군·구별 다양성 인정
- 특례에 관한 상향식 방식 적용을 통한 시·군·구의 자율성과 참여, 적용대상 확대 보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시군구 특례제도 운영 방향

- 시군구 특례제도는 시·군·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부여함
-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의 지정기준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이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례를 인정
-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에서는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실현가능성'**, **'국가기본 정책 방향과의 합치'** 등을 심의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절차

시·군·구의회 의결 ▶ 시·군·구 특례협의회 설치 및 협의 (시·군·구 ↔ 시·도) ▶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 (시·군·구 → 행정안전부 장관)

시·군·구 특례 심의 (지자체 특례심의위원회) ◀ 시·군·구 특례 지정 및 관계기관 통보 (행정안전부 장관 → 관계기관) ◀ 법령·조례 개정 등 필요조치 권고 (행정안전부 장관 → 관계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시군구 특례제도 운영 방향

시군구 특례제도 지정기준과 심의사항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지정기준	실질적인 행정수요	해당 시·군·구에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지역적·사회적인 행정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할 것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5조 제1호
	국가균형발전	해당 시·군·구의 지역적 여건에 입각한 발전전략 이행에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인접한 시·군·구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5조 제2호
	지방소멸위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서 같은 법과 관계 법령에 따른 시책 추진과 지원 외에 추가적인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5조 제3호
심의사항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충족 여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
	실현가능성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 특례 내용의 실현가능성	
	국가 기본정책 방향과의 합치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 특례 내용과 국가의 기본정책 방향과의 합치 여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기타	그밖에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3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시군구 특례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지역맞춤형 특례 발굴

-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역할 및 권한 확대
- 보충성 원칙에 입각한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 개별 시·군·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특화발전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투명성·책임성 강화
-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능률적 수행
-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 시군구 특례제도 활성화 방안

행정안전부

- ✓ 시군구 특례제도 중심 지방분권화 정책 추진
- ✓ 시군구 특례제도 컨설팅·홍보·교육 활성화
- ✓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협의·통합조정 기능 강화
-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의 연계 방안 모색 (시군구 특례제도를 활용한 관련 부여)

시·군·구

- ✓ 지역 내 행정수요의 우선적 파악을 통한 특례 발굴
- ✓ 시·군·구 중장기 발전방안과 연계된 특례 발굴
- ✓ 특례 발굴 및 지역 특화발전전략 수립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공감대 형성
- ✓ 행정안전부 시군구 특례제도 컨설팅 적극 참여
- ✓ 인접 시·군·구와 공동으로 '(가칭)특례 발굴 협의체' 구성·운영

관계부처 등

- ✓ 시·군·구의 특례 발굴을 위한 문의 및 의견조회, 자문 등 적극 협조·지원
- ✓ 시·군·구 특례 부여에 따른 법령 제·개정 등 필요 조치에 대한 원활한 협력 및 제도화 노력
- ✓ 부처 이기주의 및 칸막이 현상 극복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 노력
- ✓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위한 기회의 장 정례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향후 추진방향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제도 활성화 적극 지원

「시군구 특례제도 지정기준 구체화 연구」 정책과제 수행 중

- 시군구 특례제도 입법취지 및 차별성 등 제도 본질 검토
- 시군구 특례제도 지정기준 및 심의기준 구체화
- 시군구 특례제도 운영 방향성 제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컨설팅 지원

-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제도 전반 및 입법취지 설명회 개최
-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례 발굴 방향 정립 지원
- 행정안전부 시·군·구 특례 발굴 컨설팅 지원

유수동 부연구위원
tsoodong@krihs.re.kr, 033-769-9640

한국지방행정연구원